

해외예금보험 동향

2006. 10월

● 美 FDIC, 2005 예금보험개혁법안*에 따라 보험료 일괄 공제 시행

* 미국 연방예금보험법 주요 개정 내용은 「KDIC 금융분석정보('06.2.15, 제2006-1호)」 참조

□ 미국 FDIC 이사회는 지난 10월 10일, 2005년도 예금보험개혁법안에 따라 총 47억 달러*의 예금보험료를 일괄공제(one-time credit)하기로 의결하였음

* '01.12.31 기준 은행보험기금과 저축조합보험기금 합 0.105% 해당 금액

○ 금번 공제는 공제대상 금융회사의 차기 납부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

□ 이번 조치는 1990년대 초·중반 보험기금 확충*을 위해 특별보험료를 납부했던 금융회사의 기금적립 기여도를 반영한 것으로서

*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및 지역은행의 대규모 도산 사태 이후 미국은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 개선법(FDICIA)을 제정하여 예금보험기금 확충 등 금융시스템 개혁에 착수

○ 보험기금이 일정 목표 적립률을 상회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여 기금의 비대화 방지 및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임

□ 공제 대상 금융회사 및 공제액 산정

○ 대상 금융회사는 1996.12.31 이전에 존재했고, 1996.12.31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금융회사 또는 상기 회사를 승계한 금융회사*임

* 합병에 의한 신설·통합 금융회사, 자산 및 부채의 최소 90% 이상을 취득한 인수 금융회사

○ 개별 금융회사의 공제액은 1996.12.31 기준 부보대상 예금 비중*에 따라 산정

- 다만, 인수 금융회사의 경우 여기에 인수비율(90% 등)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

* (개별금융회사의 부보대상 예금)/(금융회사 전체의 부보대상 예금)

● 美 FDIC, 피싱 이메일(Phishing* e-mail)에 대한 소비자의 경계 당부

- * 개인정보(private data)와 낚시(fishing)의 합성어로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
- 최근 미국에서는 **발송처가 FDIC인 것처럼 사칭해**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피싱 이메일에 대한 신고가 거듭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당부
- 수신자의 은행계좌가 사기, 명의도용에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**허위사이트(FDIC Protection System)로 유인, 성명, 전화번호,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 사용**

● 아마란스 사태(Amaranth Debacle)*를 계기로 헤지펀드 규제 강화 논의 진행

- * EDHEC risk and asset management research centre 자료 “EDHEC comments on the Amaranth case : Early lessons from the debacle(www.edhec-rksk.com)”
- 아마란스 사태
 - 아마란스는 2000년에 Nick Maounis가 코네티컷 그리니치에 설립한 펀드로 2006년 6월말 기준 에너지상품 투자가 펀드자산의 50%, 전체이익의 75%를 차지하는 에너지 상품 투자 전문 헤지펀드임
 - 허리케인, 혹한 등 기상 이변에 따라 겨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겨울 인도분 선물에 과도한 매입포지션을 취하였다가 올 겨울이 따뜻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오면서 선물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2006년 9월 초·중순에 총자산(92억달러)의 65%(60억 달러) 손실 기록
 - 2006.9.16~9.17 포지션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2006.9.20 JP Morgan, Citadel Investment Group에 전달 시장정산가격(marked-to-market price)에서 14억 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포지션 청산
 - 아마란스가 택한 천연가스 스프레드 베팅 전략은 크게 무리는 없었지만 과도한 포지션 규모 및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지 못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
- 연기금과 투자은행 등이 대규모 자금을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지펀드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규제 당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대두

- 미국 하원은 9월 26일 헤지펀드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법안 검토에 착수하였고, 독일은 헤지펀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년 선진 8개국(G8) 회담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
- 그러나, 일각에서는 헤지펀드 자체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기능이 최선임을 주장하며, 과도한 규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헤지펀드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

● 홍콩 SFC 브로커사기 최소화 및 투자자보호 실행 방안* 마련

* www.hksfc.org.hk “SFC action plan to minimize broker fraud and enhance investor protection”

- 올해 홍콩에서는 증권브로커의 고객자산 유용으로 인해 증권회사 부도가 연이어 발생
 - ‘Whole Win Securities Limited’는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 주식을 담보로 불법 제공
 - ‘Tiffit Securities(Hong Kong) Limited’, ‘Wing Yip Company Limited’는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무단 매도하고 허위 계좌잔고 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실 은폐
- 이에 따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)는 최근 고객수탁자산 보호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
 - 설명회 등을 통하여 IP(Investor Participant) Accounts* 개설을 권장하고 투자 일임형 계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강조
 - * 브로커가 전권을 행사하는 투자일임형계좌(Stock Segregated Account, SSA)와 달리 고객이 계좌내의 주식거래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계좌
 - 브로커의 사기를 발견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사기법으로 고객계좌 대사조사(circularisation) 채택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시기에 대해 홍콩 회계사협회(HKICPA)와 협의

【예금보험공사 책임역 김민혁 ☎ XXXXXXXX】